# 신용카드리뷰

## The Credit Card Review

Vol 14-4(2020년 12월)

지급결제시장 구조 변화와 카드업 영향에 관한 고찰: 간편결제서비스 등장을 중심으로

박 태 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윤 종 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 지급결제시장 구조 변화와 카드업 영향에 관한 고찰 : 간편결제서비스 등장을 중심으로

박 태 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윤 종 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 -〈Abstract〉-

본 연구는 빅테크·핀테크업체와 같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이 현재 카드업 및 지급 결제시장의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가 향후 카드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문헌들과 실제 카드업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고찰한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편결제서비스는 신용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기존 지급수단을 항 상 탑재하고 이를 전달하는 접근채널이나 접근장치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서비스이다. 이는 가편결제서비스가 기존 지급수단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 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그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둘 째.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는 신용 체크카드가 탑재된 PG서비스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 가치 사슬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지급결제시장을 주도 중이다. 이는 카드사의 지급결제기능에 위협요 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이들 업체와의 제휴관계가 확산되는 요인도 되고 있다. 셋째, 카드사에게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의 제휴관계는 단기적으로 큰 우려 사항이 아니나, 장기적으로는 카 드사의 지급결제시장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드사는 이 들 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기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이용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다. 이들 업체와 공 동마케팅을 통해 카드회원 신규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들 업체와의 제휴 관계로 인해 이들 업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신용-체크카드 모두 이들 업체에 탑재되는 여러 지급수단 중의 하나로 전략하여 카드사의 고객접점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마이데이터산업, 마이페이먼트산업, 종합지급결제업 등 오픈뱅킹에 기반한 새로운 전자금융업은 고객 맞춤식 상품 및 서비스의 추천과 자금의 즉각적인 이동이 가능하여 향후 카드사의 주요 사업 부문인 카드 발급 및 결제, 대출, 데이터 판매 및 분석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단어: 간편결제서비스, 지급결제시장, 카드업,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sup>\* (1</sup>저자)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2층, Tel: 02)2011-0750, E-mail: tjpark@crefia.or.kr

<sup>\*\* (</sup>교신저자)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2층, Tel: 02)2011-0719, E-mail: idisyun@crefia.or.kr

### I. 서론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는 핀테크(FinTech) 혁신으로 과거에 적용 불가능했던 기술이 구현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일대 혁신을 일어났다. 모바일 또는 디지털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간편결제서비스 소위, '페이(Pav)'가 대거 등장하면서 국 내외 말할 것 없이, 현재 '페이' 전성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간편결제서 비스는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용어였으나, 핀테크 혁신과 '천송이 코트' 논란౹)으로 촉발된 정책적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이제는 많이 알 려지고 보편화된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렇게 된 테에는 무엇보다도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업체2)의 역할이 컸다.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 되는 상황에서 이동성과 간편성을 요구하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며 자연스럽게 지급결 제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였다. 즉, 이들 업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지 급결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지급방식의 급격한 모바일화를 일으키면서 지급결제 관련 시장 및 산업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에 서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다 보니, 이들 업체에 대한 법 적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면서 법제도적 정비 및 개선 움직임을 전개했거나 전개 중이다. 유럽연합(EU)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 2)와 우리나라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등이 대표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 같은 새로운 유형 의 사업자에 대해 법규를 명확히 하여 제도권 내에서 규율함과 동시에 이들 업체의 진 입장벽을 낮춰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있다.

결국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은 지급결제 관련 시장 및 산업 환경에 상당 한 변화를 일으킴과 동시에 법제도적 개선 움직임을 유도하면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를 촉발시킨 도화선(trigger)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카드사는 지급 결제업무가 본업이다 보니, 이들 업체를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도입되는 오픈뱅킹 또는 오픈AP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sup>1)</sup> 국내 한 드라마의 여주인공(천송이)이 입고 나온 코트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직접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구매절차로 인해 사실상 직접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온라인쇼핑에서 공인인 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였다.

<sup>2)</sup>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는 핀테크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간편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및 유통·제조업체 등으로 통상 핀테크·빅테크기업을 의미한다.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와 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금융회사와 비금 융회사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구조를 살펴본다. 둘째,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이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 즉, 지급결제 관련 시장 및 산업 환경과 법제도적 규 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 즉,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과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금융업이 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의 등장배경, 개념, 서비 스 구조 및 국내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Ⅲ장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 등장에 따른 지급결 제시장의 구조 변화를 시장 및 산업 환경 변화와 법제도적 규제 환경 변화 중심으로 고 찰한다. 그리고 IV장은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가 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전 자금융업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였으며, V장은 결론부문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시사점을 서술한다.

#### Ⅱ.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

### 2.1 간편결제서비스의 등장 및 개념

국내외 지급결제시장에서는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규모 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과 간편한 결제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수 요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간편결제서비스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중 심의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결제편의성을 갖춘 ICT업체나 유통·제조 업체3)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1> 주요국 의 지급수단 이용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카드 소액결제 선호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5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체크카드와 계좌이체까지 포함할 경우, 비현 금 지급수단 이용률은 거의 9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편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sup>3)</sup> 국내에서는 ICT업체나 유통·제조업체가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등 록이 필요하다. 다만, 단말기제조사의 경우에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 다.

#### 4 신용카드리뷰(2020년 12월)

기대에 부응하며 ICT업체, 유통·제조업체 등 핀테크기업 주도의 간편결제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현금성 지급수단 이용 증가와 더불어 핀테크 혁신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시킨 모바일 및 디지털 지갑과 같은 간편결제서비스4)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Worldpay(2018)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지갑을 활용하여 결제한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36%에 달하며, 2022년에는 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약 50종의 디지털지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의 절반가량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제공하고 있다.5)

#### 100 E)-(1) 6.0 29.0 80 29.4 62.3 60 40 24.8 22.0 53.2 16.2 20 34.3 23.1 18.0 13.6 0 한국 ㅎ주 캐나타 독일 네덜란트 ■ 현금 ■ 직불카드 ■신용카드 ■기타

<그림 1>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 비중

주: 금액기준, 호주, 캐나다(2013년), 독일, 네덜란드(2014년), 한국(2016년) 자료: 권나은 · 김민서(2016), 「2016년 지금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해 모바일기기와 같은 전자적 장치에 결제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을 일컫는다. 즉,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와 같은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 또는 앱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한 후, 간편한 인증(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등)만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이중에서 특히, 모바일 간편결제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계좌기반의 선불계정 등을 등록하고 MST, NFC 및 QR코드와 같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결제기술·방식으로 지급결제를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2>는 이를 그림으로

<sup>4)</sup> 해외에서는 아직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모바일장치 및 PC 등을 활용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를 제공하는 모바일지갑 (mobile wallet)을 포함한 디지털지갑(digital wallet)이 우리나라의 간편결제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sup>5)</sup> Mobey Forum(2017)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에는 49종의 디지털지갑이 존재하며, 이중 23종이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디지털지갑 서비스이다.

표현한 것이며, 은행 계좌기반으로 OR코드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제로페이도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간편결제서비스는 금융위기 이후에 펀테크 혁신으로 등장한 새 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로 소위, 신종 지급결제서비스로 그 개념을 정리해볼 수 있 다.



<그림 2>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의 개념

주: 은행계좌 등록은 은행계좌 기반의 선불계정을 의미

#### 2.2 간편결제서비스의 구조

간편결제서비스는 전자방식의 비현금 지급수단을 전달하는 매체 즉, 접근채널 및 접 근장치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대대적 혁신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간 편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와 같은 지급수단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 닌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채널 혹은 접근장치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서비스이다.0 이런 까닭에 간편결제서비스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의 비현금 지급수단이 항상 탑재되어 있다. 결국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기존 지급수단을 대체하는 혁신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라 기존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채널(인터넷, 모바일 등) 및 접 근장치(스마트폰, PC 등)의 편의성을 대폭적으로 혁신시킨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 림 3>은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표현한 그림이다. 현재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에는 계좌이체·직불결제시스템, 카드결제시스템, 전자화폐시스템 등이 있 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급수단, 접근채널 및 접근장치들이 있다. 상술했듯이, 간편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의 비현금 지급수단을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

<sup>6)</sup> 윤태길·김용구(2016)는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즉,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지급수단 등장(A new payment)이라기보다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 기존 지급수 단 및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A new way to pay)으로 평가하고 있다.

니라 기존 소액결제시스템 상의 접근채널이나 접근장치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 국내 소액결제시스템 상의 지급결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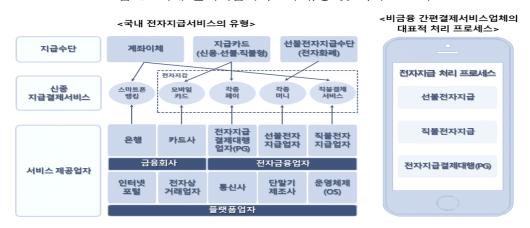
<그림 4>는 국내 전자지급서비스의 유형 및 처리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간편결제서비스는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뱅킹, 모바일카드, 각종 페이(Pay), 머니(Money) 등과 같은 신종 지급결제서비스를 말한다. 결국, 신종 지급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기반의 다양한형태의 새로운 전자적 지급방식으로 사실상 간편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스마트폰뱅킹과 모바일카드 등과 같은 간편결제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중이며, 대부분의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7)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처리 프로세스로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직불전자지급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8)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7 주도 중이다. 이들 서비스업체는 대체로 PG를 포함하여 선불 및 직불 전자지급 등

<sup>7)</sup> 본 연구에서는 선불전자지급업자, 직불전자지급업자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같은 전자 금융업자와 단말기제조사뿐만 아니라 핀테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간편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 비스를 제공하는 ICT 및 유통·제조업체를 혼용하여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로 지칭한다.

<sup>8)</sup> 지급수단별로 분류할 경우, PG는 지급카드 PG, 계좌이체 PG, 가상화폐 PG, 상품권 PG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급카드 PG 즉, 신용·체크카드 PG를 중심으로 다룬다.

의 기능을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전자지갑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 <그림 4> 국내 전자지급서비스의 유형 및 처리 프로세스



<그림 5>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대표적 처리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먼 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살펴보자, 스마트폰과 같은 모 바일기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저장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서비스가 바로 선불전자지급서비스로, 보통 머니(Money)로 불린다. 이용자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선불금을 충전한 후, 간편 인증만으로 가맹점의 선불계좌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 되는 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선불전자지급서비스 는 선불금 충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나. 막대한 규모 의 고객을 가진 플랫폼업체의 이용자가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증가 세가 기대되는 서비스이다. 다음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직불전자지급서비스로, 대금 결제 시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서비스 이다.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 특정 앱에 계좌를 등록해놓고 온 오프라인 대금 결제 시 간 편한 인증을 통해 송금 및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비금융 간편결제서비 스업체의 PG서비스는 모바일기기를 매체로 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카드 거래 및 승 인 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보통 페이(Pav)9)로 불린다. 처리 프로세 스를 보면,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카드를 간편 인증을 통해 확인해서 온라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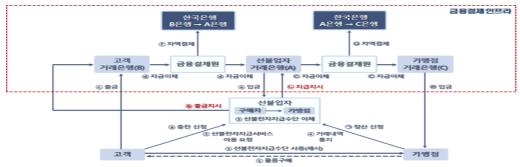
<sup>9)</sup> 본 연구에서는 신종 지급결제서비스인 스마트폰뱅킹, 모바일카드, 페이, 머니, 직불결제 등과 이들 기능을 최소 두 가지 이상으로 묶은 디지털지갑 모두를 간편결제서비스 즉, 페이(Pay)로 표현하고 있으나, 윤태길·김용구(2016)는 비금융 간편결제서스업체가 제공하는 PG서비스만 페이로 보고 있다.

#### 8 신용카드리뷰(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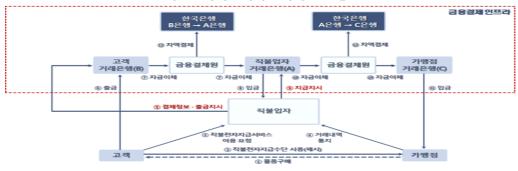
즉시 결제 처리가 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바코드를 제시하거나 모바일기기를 단말 기에 접속해야만 결제가 진행되는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대표적 처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이들 업체는 은행과 제휴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은행이 이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사실상 지급지시전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그림 5>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대표적 처리 프로세스

####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처리 프로세스>



#### <직불전자지급서비스 처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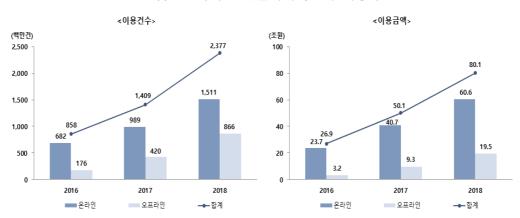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처리 프로세스>



#### 2.3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현황10)

<그림 6>은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규모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림으로 나타 낸 것이다. 국내 간편결제는 2016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3.8억건 및 80.1조원으 로 2016년 대비 177.0% 및 198.2% 증가한 수준이다.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모두 온라인 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것을 <그림 6>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6>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규모

<표 1>은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주체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및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 총 43개사가 50종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계좌기반, 신용카드기반의 자체 간편결 제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고, 전자금융업자와 단말기제조사는 금융회사와의 제휴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7개 은행이 계좌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 11종을 출시하며 기존 현금카드·선불카드를 대체하고 있다. 카드업은 8개 카드사가 신용 카드기반의 앱카드 및 생체인식카드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 9종을 선보이고 있다. 전자 금융업자는 총 26개사가 28종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이중 PG사가 대표적인 전자금융업자이다. PG사는 자체 유통망이나 플랫폼을 가진 온라인쇼핑몰 또는 검색포털 등이 PG사를 겸업하는 겸업 PG사와 자사 간편결제플랫폼을 온라인쇼핑몰에게 제공하는 전업 PG사로 구분되어진다.

<sup>10)</sup> 이 절에서는 2019년 4월 18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 편결제 서비스 현황」의 보도자료 수치(2018년말 기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전자금융업자

(26개사, 28종)

단말기제조사

(2개사, 2종)

제공주체	제공 형태		
은행 (7개사, 11종)	•계좌기반 선불·직불형 간편결제서비스 제공		
카드사 (8개사, 9종)	•자사 카드기반 앱카드형 간편결제서비스 제공		

→ 전업 PG사 자사의 간편결제플랫폼을 온라인쇼핑몰에게 제공

→ 겸업 PG사: 자체 유통망,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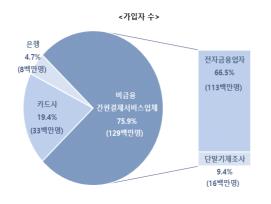
<표 1>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주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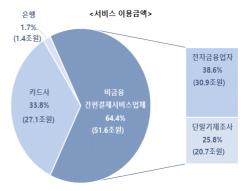
• 전자금융업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

<그림 7>은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주체별 가입자수 및 이용금액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다. 간편결제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70백만명인 가운데, 전자금융업 자의 수가 113백만명으로 최대 가입자 비중(66.5%)을 차지하고 있고, 카드사가 33백만명 (19.4%), 단말기제조사가 16백만명(9.4%), 은행이 8백만명(4.7%)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및 단말기제조사가 각각 30.9조원 (38.6%), 27.1조원(33.8%) 및 20.7조원(25.8%)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권 이용금액(1.4조원)은 미미한 편이다. 이중 전자금융업자와 단말기제조사의 가입자 수 및 이용금액 비중이 75.9% 및 64.4%로 거의 카드사의 2~3.5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간편결제서비스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지급결제서비스를 본업으로 하는 카드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 카드사의 지급결제기능에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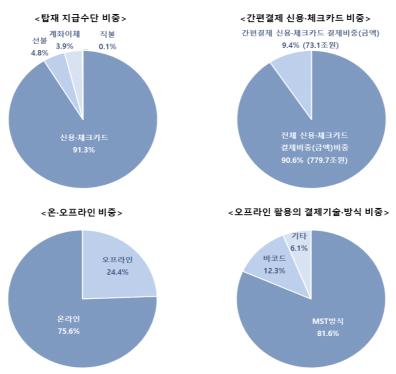
<그림 7>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주체별 가입자 수 및 이용금액





<그림 8>은 간편결제서비스 탑재 지급수단 및 결제기술·방식 비중을 나타낸 그림이다. 간편결제서비스에 탑재된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좌 이체나 선불 및 직불 등의 전자지급수단 탑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카드 결제가 보 편화된 상황에서 간편결제서비스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PG사에게 신용·체크카드의 정보 저장이 허용<sup>11)</sup>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간편결제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이용금 액 비중은 전체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간편결 제서비스는 온 오프라인에서 각각 60.6조원, 19.5조원을 기록하며 전체 이용금액의 75% 가 온라인에서 이용되었다. 이중 오프라인에서 활용된 무선통신기술 즉, 결제기술 방식 은 삼성페이 MST 방식의 비중이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바코드 방 식(12.3%) 순이며, NFC, 마그네틱, OR코드 방식 등의 비중은 대략 6%에 불과한 수준이 다.

<그림 8> 간편결제서비스 탑재 지급수단 및 결제기술·방식 비중



이상을 통해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금 액이 가장 많고, 오프라인보다는 대체로 온라인에서 이용 중이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sup>11)</sup> 금융위원회(2014),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보도자료.

대부분 단말기제조사인 삼성페이의 MST방식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

#### 3.1 시장 및 산업 환경 변화

최근 국내외 핀테크 혁신으로 인해 모바일·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는 실체적 개념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기기로 급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고, 지급결제 관련 시장 및 산업도 예외는 아닐 뿐더러 이러한 혁신적인 구조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이 바로 카드업을 포함한 지급결제산업이다. 특히, 지급결제산업은 핀테크기업의 출현에 따른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다양한 간편결제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이 급성장하는 형태로 진화 중이다. 예를 들면, 간편결제 앱, 비접촉식 결제, 모바일 POS 및 클라우드기반 결제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간편결제서비스를 꼽을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의 급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12)

국내 지급결제시장도 모바일을 중심으로 그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신종 지급결제서비스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그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 중이다. 과거에는 플라스틱카드나 인터넷뱅킹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접근채널이나 접근장치를 통해 지급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 지급수단과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각종 페이, 머니, 직불결제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 뿐만 아니라 카드사, 은행도 모바일카드(앱카드) 및 스마트폰뱅킹 등과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지급결제시장은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채널 및 접근장치의 대대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은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장파괴적(disruptor) 속성으로 인해 지급결제시장을 주도 중이다.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가치사슬(value chain)의 핵심위치에 있었고, ICT기업은 금융회사 서비스의 보조 역할 또는 해당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역할에 불과했다. 그

<sup>12)</sup> Light, J.(2013), Digital payments transformation.

러나 현재에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ICT기업의 시장파괴적 속성으로 새로운 서비 스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지급결제 관련 시장 및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즉, ICT기업은 신흥 지급결제기술을 통해 간편성 및 편리성을 요구하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 하며 기존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가치사슬을 우회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의 지급결제기능에 큰 위협요인이 되는 동시에 ICT기업과의 제휴관계가 확산되는 요인도 되고 있다.

#### 3.3 법제도적 규제 환경 변화

최근 들어,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출현에 따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규제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지급결 제 프로세스에 참가 중인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에 대한 법적 성격의 모호성과 새 로운 형태의 보안 위험 우려 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상기의 <그림 4>에서 봤듯 이, 현재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서비스 제공 면면은 다양하다. 금융회사가 독자적 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ICT 및 유통업체가 금 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단말기제조사의 경우에는 전자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와의 제휴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13) 그러나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지급결제수단, 지급결제업 무. 지급결제업자. 지급결제제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규제 및 감독 법규는 존재하지 않 고,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법 등에서 분산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4)

<sup>13)</sup>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는 전자지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금융회사와의 제휴 를 통해 금융회사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을 중개하는 형태인 관계로 전자금융업자로 미등록하고 있다.

<sup>14)</sup> 정순섭(2018), 「지급결제법의 입법방향」,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발표자료.

#### 14 신용카드리뷰(2020년 12월)

<표 2>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수단 및 지급결제업무

현행법상 지급결제수단	지급결제업무
□ 현금(법화)       □ 예금계좌 간 이체       •자금이체       •직불       □ 비예금계좌 간 이체       •선불       □ 신용       •후불	□ 은행법상 예금업무 □ 은행법상 환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업무 □ 외국환거래법상 외화이체업무 □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자료: 정순섭(2018), 「지급결제법의 입법방향」,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발표자료.

<표 3>은 국내 주요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및 적용법규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을 보면, 현재 간편결제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적용법규와 영업규제 및 인허가 요건이상이하다. 영업규제나 인허가 및 등록 요건을 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보다 규제수준이 엄격하고, 선불전자지급업자, 직불전자지급업자 및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간에도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렇듯, 간편결제서비스업체를 규율하는 국내 현행법규가서로 다르다보니, 동일 기능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서비스 유형별로법적 성격도 상이한데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발생하면서 규제체제의 전면적인 정비 필요성이 증대한 것이다.15)

<표 3> 국내 주요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체 및 적용법규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체		적용법규	영업규제	인허가 및 등록 요건								
모바일(앱)카드	금융회사	카드사	여신전문	금융위	자본금 200억원 이상								
77 ( 1) 1 -		7	금융업법	허가	시는급 200 국천 의 8								
스마트폰뱅킹	ㅁ엉┦시	은행	은행법	금융위	자본금 1,000억원 이상								
		- 70	<b>二</b> 8日	인가									
직불전자지급서비스 간편	비금융 간편결제				자본금 20억 이상								
					유동성비율 50% 이상								
		네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47 47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자금융	금융위	자본금 20억 이상
		금융업자	거래법	등록	유동성비율 40% 이상								
DC भीमी र	서비스업체				자본금 10억 이상								
PG서비스					유동성비율 40% 이상								

자료: 윤태길·김용구(2016),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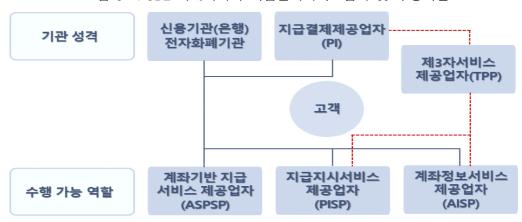
<sup>15)</sup> 국회입법조사처(2018)에 따르면,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PG 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분류되고 있고, 단말기제조사들은 현행법상 전자금 융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되어있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은 지급결제 시장 및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법제도적 정비 및 개선 움직임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움직 임은 빅테크·핀테크기업과 같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으로 다양한 지급결 제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행법령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지급결제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험 우려 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U 는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발전에 따른 지급결제산업의 변화 대응 및 혁신 도모를 위해 기존 PSD를 개정한 PSD2를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결제 인 프라의 전반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2019년 2월 발표하 며 금융결제업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9>는 PSD2 체계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업자 및 수행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유 럽연합의 PSD2는 지급결제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규제 대상기관 중 지 급결제제공업자 PI(Payment Institution)의 포괄적인 정의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인 TPP(Third-Party Provider)16)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규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17) 여 기서 TPP는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계좌정보에 접근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지급지시전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로서 크게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및 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로 구분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하 고 있다. 따라서 유럽 PSD2는 은행, 전자화폐기관(E-money institution) 및 PI가 제공하던 기존 지급결제서비스를 계좌기반 지급서비스제공업자인 ASPSP(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 Provider), PISP, AISP 등 수행역할별로 재편하여 지급결제산업의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sup>16)</sup> TPP(Third-Party Provider)는 일반적으로 특정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여하는 외부의 법 적 실체(legal entity)인 제3자를 지칭하며, 타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sup>17)</sup> 유럽지역에서는 PSD2 도입 이전부터 AISP 및 PISP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유럽연합(EU)의 통합된 규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림 9> PSD2 체계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업자 및 수행역할

자료: HSBC(2017), Payment Services Directive II(PSD2).

국내외에서 간편결제서비스, 금융플랫폼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 라 우리나라도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 뒤처질 우려와 폐쇄적 금융결제시스템 및 경직된 규제체계로 인한 금융혁신 유 도의 어려움 등이 바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추진배경이다. <표 4>는 우리나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나타낸 표로써,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 쟁 촉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 면, 금융결제시스템의 접근성 및 개방성 확대와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유연하고 탄력 적인 규제체계 도입 등으로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18)도 마련되어 추진 중 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고객 의 데이터를 통합 조회하여 본인의 신용정보관리나, 개인맞춤형 금융상품 자문 및 추천 등의 서비스를 위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 도입방안'을 2018년 7월 19일 발표하였 다. 즉, 오픈 API를 기반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및 통신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집적이 용이한 환경 조성을 통해 마이데이터(MvData)산업 이른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정보의 통합 수집 및 조회를 통해 신용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관리까지 가능한 맞춤식 서비스로 육성한다는 점에 서 유럽의 AISP와 거의 동일하다.19) 결국, 우리나라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오픈뱅킹 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PISP, AISP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의 도입20)이 추진되는 특징을

<sup>18)</sup> 금융위원회(2020),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

<sup>19)</sup> 유럽 AISP는 은행 고객의 계좌정보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및 통신사, 공공기관 등과 같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권 데이터도 포함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이고 있다.

<표 4> 우리나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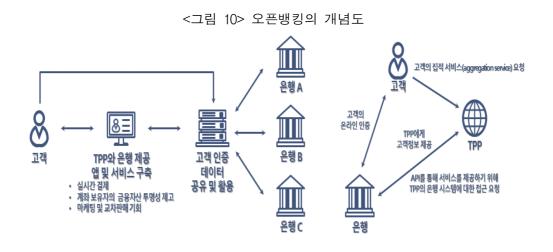
	3대 추진전략 · 9대 추진과제	주요내용		
	추진전략 1.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추 진 과 제	(1)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은행결제망을 이 용할 수 있게 공동결제시스템 구축		
	(2) 오픈뱅킹 법제도화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와 수수료 차별 금지		
	(3)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결제망 개방	핀테크결제사업자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시 독자적인 자금이체 가능		
	추진전략 2. 금융결제	세업 체계 전면 개편		
추 진 과 제	(4) 업종별 →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	전자금융업 기능 확대와 진입제도 및 건전성· 소비자보호 규제 방안 마련으로 탄력적 규율 체계 전환		
	(5)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산업) 및 종합지 급결제업 도입으로 결제·송금 외 종합자산관 리도 가능		
	(6)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핀테크사업자에 월 30만원 한도 후불(신용) 결제 허용		
추진전략 3. 규제·세제 시장 친화적 개선				
추진과	(7) 낡은 규제 개선 •간편결제수단 이용 충전한도 확대 •전자금융업자 외국환 간편결제 허용 •간편결제 고객에 유리한 혜택제공 허용 •간편결제 단말기보급 리베이트 규제 완화	•현행 200만원 → 300~500만원 상향 •국내 간편결제로 해외에서도 환전 없이 사용 가능 •신용카드 대비 간편결제 고객에게 많은 혜택 제공 •새로운 결제단말기 무상 보급시 부당한 리베이트 무(無)해당(유권해석)		
제	(8)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 간편결제에 대중교통 결제기능 지원 • 간편결제사업자 제로페이 연계 강화	•모바일 교통카드(티머니 등)와 연계한 간편 결제(직불 결제)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페이 참여 유도로 가맹점 확보 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외 관계부처 합동(2019),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보도자료.

<sup>20)</sup> 엄밀히 말하면,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서 말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 PSD2에서는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AISP에 대해 지급결제제공 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업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제 공 범위 측면에서 유럽 AISP와 국내 마이데이터산업 간에 차이가 있긴 하나, 국내에 도입되고 있 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의 하나로 간주하여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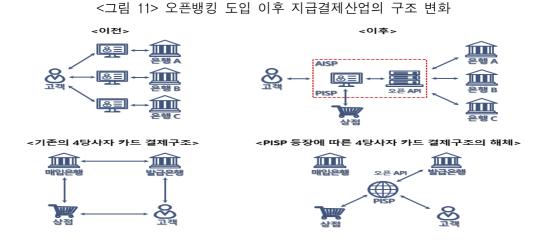
우리나라와 유럽의 규제 정비의 핵심은 바로 오픈뱅킹(open banking)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픈뱅킹은 고객의 개방된 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TPP와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최근 오픈뱅킹은 우리나라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BIS(2019)에 따르면, 오픈뱅킹 도입과 관련된 고객의 금융데이터에 대한 접근방식은 주요국들마다 서로 차이가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객의 금융데이터에 대한 법규범적(prescriptive) 접근방식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은행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국가들로 유럽과 인도, 멕시코 등이 있다. 다음은 시장 촉진적(facilitative) 접근방식으로 가이던스(guidance) 및 권장 표준 API 제정 등을 통해 고객의 금융데이터 공개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주도적(market-driven) 접근방식이 있다. 이는 기존처럼 TPP와의 제휴를통해 고객의 금융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명시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던스 등이 없다. 이런 접근방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중국 등이 있다.

BIS(2019)에 따르면, 국가별 오픈뱅킹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BIS회원국들은 대체로 오픈뱅킹에 대해 TPP와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통하여 실시간 결제, 계좌 보유자의 금융자산 투명성 제고, 마케팅 및 교차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앱 및 서비스 구축의 토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림 10>은 오픈뱅킹의 개념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동의(온라인 인증) 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데이터가 오픈 API를 통해 TPP와 타금융회사에게 공유 및 활용되어 질수 있도록 금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방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오픈뱅킹은 타사의 앱 및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모든 금융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은 개별 은행에 직접 접속하기보다는 집적된 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혁신적 금융 앱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금융자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오픈뱅킹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TPP 즉, PISP 및 AISP에게 은행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 도록 하는 오픈뱅킹을 통해서 지급결제시장의 혁신 및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즉, 유 럽 PISP 및 AISP에게 오픈뱅킹(또는 오픈API)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기 능 중 일부분을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여 지급결제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1>의 오픈뱅킹 도입 이후 지급결제산업의 구조 변화에 서 보듯이, 이전에는 특정 은행에서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했다면, 현재는 단일 API를 통해 고객의 모든 금융데이터 호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 문이다. 이는 마치 컴퓨터 기능 중의 하나인 P&P(Plug and Play)21) 기능처럼, 고객의 동 의 시 바로 고객의 은행 계좌정보를 오픈뱅킹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고객이 동의할 경우에는 단일 API를 통해 해당 고객의 모든 계좌정보에 대한 접 근 및 데이터 집적이 가능하게 되어 혁신적인 금융 앱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AISP는 여러 은행에 분산된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금융상품 추천, 마케팅 및 교차판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PISP는 이체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오 픈뱅킹을 활용해 대금이체나 송금, 고지서납부 등과 같은 지급지시전달서비스가 가능하 게 된다. 결국, 오픈뱅킹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지급결제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전반 적인 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sup>21)</sup> P&P(Plug and Play)는 이용자가 마우스, 프린터 등과 같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변장치들이 연결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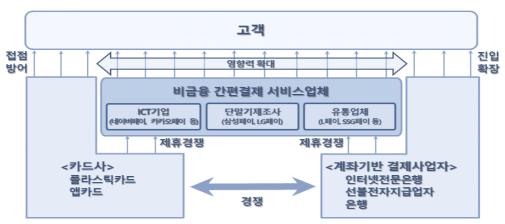


IV. 카드업 영향 분석

이장에서는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 즉,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과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등 오픈뱅킹에 기반한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이 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한다.

#### 4.1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

<그림 12>는 지급결제시장 참가자간의 경쟁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지급결제시장은 막대한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가진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금융회사와의 제휴를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카드사의 주도권이 약화됨과 동시에 시장 참여자간의 경쟁이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카드사, 은행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고객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접촉점인 고객접점 장악을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 자사플랫폼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카드사의 고객접점 주도권은 많이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서비스업체는 신용·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PG서비스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온라인 지급결제시장에서 카드사를 이미 압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금융간편결제서비스업체는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벗어나 오프라인 지급결제시장까지 진출을확대하고 있고,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선불전자지급업자 등 계좌기반 결제사업자의진압도 늘어나면서 지급결제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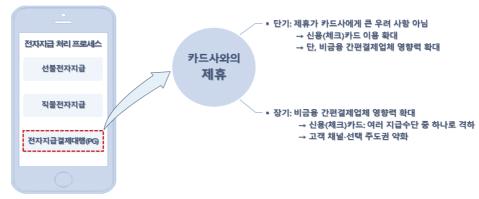


<그림 12> 지급결제시장 참가자간의 경쟁구도

<그림 13>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 카드사간의 제휴 영향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카드사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의 제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카드사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PG서비스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이용규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막대한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가진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플랫폼을 통한 신규 회원의 유치로 신용·체크카드 이용규모 확대가 가능한데다, 공동 마케팅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다보니 이와 관련된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의 제휴는 카드사에게 단기적으로 큰 우려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의 제휴는 이들 업체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카드사의 시장주도권을 더욱 약화시킬 소지가 크다. 이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신용카드·체크카드 모두 해당 서비스업체에 탑재되는 여러 지급수단 중의 하나로 그 지위가 격하되어 고객접점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처리 프로세스>



#### 4.2 오픈뱅킹 기반의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현재 국내에서는 마이페이먼트산업22), 종합지급결제업, 마이데이터산업 등과 같은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전자금융업은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오픈뱅킹은 두 가지 큰 틀에서 구축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마이페이먼트산업 및 종합지급결제업의 법적 근간이 되는 자금이체 기능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데이터산업의 근간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표준 API를 구축하는 것이다. 향후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은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마케팅 및 교차판매 등을 할 수 있어 카드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을 마이데이터산업, 마이페이먼트산업, 종합지급결제업및 소액후불결제기능으로 구분하여 카드사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하다.

#### 4.2.1 마이데이터(MyData)산업

현재 우리나라는 고객의 금융자산을 통합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을 유도할 목적으로 '데이터 표준 API' working group 구성(2019.4월)하여 데이터 제공의 범위를 현재 논의 중이다. <표 5>는 표준 API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업권별 제공내역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금융업권은 일반적으로 계좌보유자 정보와 이들의 보유자산 및 부채 정보, 공시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sup>22)</sup> 국내 마이페이먼트(MyPayment)산업은 유럽 PSD2의 PISP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페이먼트산업과 PISP를 혼용하여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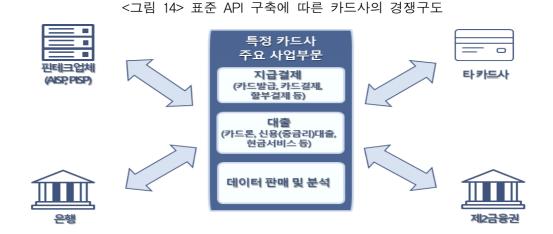
카드사는 카드이용 결제대금 및 결제은행 내역이나, 장단기대출 이용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융데이터와 융·복합을 통해 고객의 본인 데이터 활용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통신사, 공공기관 등 비금융업권의 데이터도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통신사,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 제공내역은 통신료 납부정보, 휴대폰소액결제에 관한 정보, 세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관한 납부정보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의 범위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제공업권		제공내역
금융권	은행·저축은행	
	카드사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 ··보유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회사	·모ㅠ^ੵੵ ᆾ 무세에 원인 경모   ·공시 상품에 관한 정보
	보험사	0 1 01 1 22 0
비금융권	통신사	·통신료 및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관한 납부 정보

<표 5> 표준 API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업권별 제공내역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오픈뱅킹 즉, 표준 API 구축은 국내에 PISP가 활용하는 오픈 뱅킹 외에도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가 용이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사실상 유럽의 AISP에 해당하는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적인 목적이 담겨있다. PISP의 경 우, 유럽이나 우리나라 모두 지급지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계좌정보(minimum payment functionality)만을 공유·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국내 마이데이터산 업은 특정 고객의 본인신용정보관리, 금융자산 통합관리를 위해 해당 고객의 금융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신사,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까지 활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 API를 통한 고객 데이터 접근 및 집적이 용이한 환경 조성은 국내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카드사도 신규 사업자로서 마이데이터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림 14>는 표준 API 구축에 따른 카드사의 경쟁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마이데 이터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카드사는 표준 오픈 API를 통해 카드발급, 대출상품, 데이터 판매 및 분석 등에서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타 카드사나 타 금융업권 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카드발급부문에서 카드사는 현재 빅테 크·핀테크 플랫폼업체와의 제휴관계를 통해 카드회원 신규모집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성화는 특정 카드사의 카드발급 프로세스 기능 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카드고객뿐만 아니라 비카드고객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적합한 혜택이 탑재된 카드상품의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의 대출상품부문의 경우에 타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 제2금 융권 및 P2P금융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표준 API를 활용하여 빅데이터(Big Data) 기반의 개인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사의 데이터 판매 및 분석 부문은 카드발급이나 대출상품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카드사가 카드회원 및 가맹점 정보, 카드회원의 가맹점 매출정보 등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이러한 데이터를 필요한 업체에 유상판매가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카드회원의 소비패턴분석 또는 가맹점 상권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2.2 마이페이먼트(MyPayment)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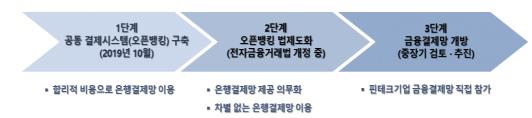
마이페이먼트산업은 고객의 은행 계좌에 기반한 지급지시를 전달하는 결제서비스업으로 향후 제도권내에서 규제됨과 동시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PISP는 은행과 연동하여 고객의 은행 계좌에 기반한 지급지시전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림 15>의 American Express의 "pay with bank transfer" 서비스 이용절차를 보면, 고객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은행의 뱅킹앱에 직접 접속할 필요없이 특정 PISP앱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계좌기반의 지급지시전달을 통해 결제가가능하다.

#### <그림 15> American Express의 "pay with bank transfer" 서비스 이용절차



<그림 16>은 우리나라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0월 1단계인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시행<sup>23)</sup>되었다. 아직 마이페이먼트산업 도입 전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및 핀테크업체를 중심으로 마이페이먼트사업이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단계 '오픈뱅킹'은 마이페이먼트사업자의 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권 자율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단계인 오픈뱅킹 법제도화 마련 즉, 마이페이먼트사업자의 오픈뱅킹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그림 16> 우리나라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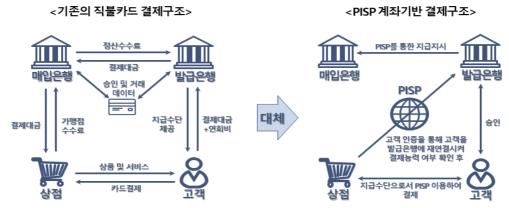


<그림 17>은 4당사자 직불카드 결제구조의 PISP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value chain)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7>을 보면, 유럽의 PISP 계좌기반 결제서비스는 직불카드 결제구조상의 카드발급 및 전표매입과 같은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없는 구조

<sup>23)</sup> 소형 핀테크업체 등 한정된 이용기관과 높은 이용료로 미활성화된 금융결제원 '공동 오픈 API'를 모든 핀테크업체가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다 보니 특히, 온라인 직불카드 결제구조보다 활성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24) 이는 카드발급 및 전표매입과 같은 프로세스가 결제구조에서 없어져 직불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기반의 결제구조가 직불카드 결제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유럽 카드의 결제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나25), 유럽과 동일한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PISP 계좌기반 결제가 직불·체크카드 결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PISP 계좌기반 결제가 활성화되어 기존의 직불카드 결제 이용이 유명무실해지면 결국 직불카드 발급이나 전표매입과 같은 수수료수익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맹점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고객의 경우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는 직불카드 결제보다는 PISP 계좌기반 결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카드업 역시 PISP 계좌기반 결제서비스가 확산될 시, 체크카드와 관련된 수수료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림 17> 4당사자 직불카드 결제구조의 PISP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 변화



결국 PISP 계좌기반 결제서비스의 활성화는 국내 카드사의 체크카드 이용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다분하고, 궁극적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를 축소시킬 위험도 상존한다. 그러나 유럽 4당사자 직불카드 결제구조에서의 매입은행 및 발급은행은 PISP 등장에따른 카드거래 규모 축소로 인한 수수료수익 감소를 PISP 인가 취득이나 이와 연계한상품 개발 등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국내 카드

<sup>24)</sup> Huntswood(2019), The changing value chain: open banking and the future of card payments ...

<sup>25)</sup> 국내의 카드시장(BC카드 제외)은 카드사-가맹점-카드회원으로 구성·운영되는 3당사자 구조로, Visa 및 Mastercard 중심인 미국 및 유럽 카드시장의 4당사자 구조, 즉, 발급은행-매입은행-가맹점 -카드회원으로 구성·운영되는 구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업 역시 PISP 계좌기반 결제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카드 이용규모 축소로 인한 수수료수 익 감소분을 PISP 사업영위를 통해 일정부문 보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예를 들면, 카드이용 결제대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좌기반 결제 및 송금 지급지시전달서비스, PISP와 연계된 카드발급 및 신용공여 서비스 등 보다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 4.2.3 종합지급결제업 및 소액후불결제기능

우리나라는 은행과 제휴 없이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자기자본, 전산역량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춘 결제사업자에게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를 통해 독립적으로 자금이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이다. 다시 말해, 종합지급결제업은 고객의지급결제전용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여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의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예대업무는 불가능한 플랫폼사업이다. 사실상 단일 라이선스(licence)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영위가 가능한 플랫폼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종합지급결제업은 유럽지역에서 전자화폐기관 EMI(Electronic Money Institution)이나 일부 PI26)가 수행하는 계좌기반 서비스와 거의 유사하다. 왜냐하면 유럽의 EMI 및 PI는 계좌 발급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자지급이 금지된 지급결제전용계좌를통해 다양한 계좌기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ASPSP27)의 한 부류이기 때문이다. 유럽과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은행과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서비스에도 이런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의 레볼루트가 종합지급결제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레볼루트는 2017년 2월 지급결제전용계좌를통해 간편결제라던지, 송금, 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향후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방대한 고객기반의 플랫폼을통해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감과 동시에,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맞물릴 경우 카드사의지급결제를 포함한 주요 사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하는 플랫폼업체가 막대한 규모의 고객을 활용해서자체 계좌로 잔고를 확대할수 있는데다, 이런 잔고를통해서 다양한결제 또는 금융상품중개 및 판매로도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허용되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sup>26)</sup> PI가 ASPSP 역할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인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며,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AISP 및 PISP 역할만 수행 가능하다.

<sup>27)</sup> 상술한 <그림 9> PSD2 체계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업자 및 수행역할에서 봤듯이, 신용기관 (Credit Institution), EMI 및 일부 PI가 ASPSP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은행과 같은 신용기관은 수 신계좌기반의 지급서비스를 하는 반면에, EMI 및 PI는 지급결제전용계좌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신용·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계좌기반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종합적인 지급결제전 문회사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금결제업의 충전금과 결제액간의 차액 즉, 대금 부족분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후불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소액후불결제는 현행 하이브리드(hybrid) 체크카드의 수준28)인 30만원 한도로 우선 도입될 방침이나, 인당 한도 또는서비스업체 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내 소액 후불결제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마이너스통장 연계 체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등이 있고, 현행법상 카드사와 은행만이 신용공여의 주체이다. 빅테크·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될 경우에, 카드사의 지급결제 기능 중고액 후불결제, 할부결제 등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잠식당할 위험도 존재한다.

#### V. 결론

간편결제서비스는 모바일 또는 디지털을 활용해 결제정보를 등록한 후,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산업 및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이다. 특히,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ICT기업 및 유통·제조업체 이른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은 국내외 지급결제 관련 시장 및 산업 환경 변화와 법제도적 규제 환경 변화에 하나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이 국내카드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와, 이런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가 또 카드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의 등장이 현재 카드업 및 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지급결제시장의 구조 변화가 향후 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문헌들과 실제 카드업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등의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편결제서비스는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기존 지급수단을 항상 탑재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 즉, 접근채널 또는 접근장치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서비스이다. 이는 간편결제서비스가 기존 지급수단을

<sup>28)</sup> 금융감독원(201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1인당 최대 2매 발급 가능하며, 매당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텎을 활용하여 이를 전 달하는 방식에서 그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비금융 간편 결제서비스업체는 시장파괴적 속성으로 신용·체크카드가 탑재된 PG서비스와 같은 간편 결제서비스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지급결제시장을 주도 중이다. 이는 카드사 의 지급결제기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이들 업체와의 제휴관계가 확산되는 요인도 되고 있다. 또한,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에 대한 법적 모호성과 새로운 형태 의 보안 위험 우려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와 유럽 등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법규를 명 확히 해서 제도권에서 규율하거나 규율할 예정이다. 이는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를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서비스제공업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금융업의 새로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카드사에게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의 제 휴관계는 단기적으로 큰 우려 사항이 아니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시장 주도 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드사는 이들 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기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이용규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와 공 동마케팅을 통해 카드회원 신규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이들 업체와의 제휴관계로 인해 이들 업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신용·체크카 드 모두 이들 업체에 탑재되는 여러 지급수단 중의 하나로 전락하여 사실상 카드사의 고객접점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오픈뱅킹에 기반한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은 향후 카드사의 주요 사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마이데이터산 업은 카드회원에 대한 고객 맞춤식 상품 및 서비스의 추천이 가능하여 카드사의 카드발 급, 대출상품, 데이터 판매 및 분석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마 이페이먼트사업의 활성화는 사실상 계좌기반 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카 드사의 체크카드 이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소지가 크고, 궁극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규 모도 축소시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방대한 고객기반의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감과 동시에 마 이데이터산업의 활성화가 맞물릴 경우에 카드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픈뱅킹(또는 오픈 API)에 기반한 마이데이터산업, 마이페이먼트산 업, 종합지급결제업 등과 같은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는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여 지급결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 반영된 결 과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향후 타 카드사뿐만 아니라 타 금융업권, 빅테크·핀테크업 체와 같은 비금융 간편결제서비스업체와의 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확보는 카드사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향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다. 이는 지급수단을 포함해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고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드사에게는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주체인 카드회원 이탈 방지와 새로운 회원 유인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나은 · 김민서(2016), 「2016년 지금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지급결 제조사자료 제 2016년-9호,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2012),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 금융감독원(2019),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보도자 료.
- 금융위원회 외 관계부처 합동(2018),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외 관계부처 합동(2019),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4),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20),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보도자료.
- 김시언·김상봉(2019), "카드사 부대업무 확대 방향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리뷰」, 13(2), 1-17.
- 김정렬(2019),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간편결제 확대가 신용카드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 용카드리뷰」, 13(4), 1-22.
- 김주일·이세우(2020), "경제성장은 신용카드 사용을 증대시키는가?", 「신용카드리뷰」, 14(1), 1-18.
- 박태준 · 김민정(2020),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여신금융연구소.
- 박태준·윤종문(2018), "지급수단의 현대화와 신용카드 제도의 역할 및 개선방안", 「한국금융 법학회 추계학술대회 | .
- 윤성관(2018),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의 현황과 과제」,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발표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 윤태길·김용구(2016),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제 2016년-4호, 한국은행.
- 정순섭(2018),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발표자료, 51-77.
- 최규선·이지영(2018), 「유럽연합의 PSD 2 시행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급결제 와 정보기술 제69호, 금융결제원.
- 최지현(2016),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Light, J.(2013), Digital payments transformation: from transactions to consumer interactions, Accenture.
- Light, J., McFarlane, A., Barry, K., and Ruotsila, I.(2017), Seizing the opportunities unlocked by the EU's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Accenture.
- BIS(2019), Report on open banking an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 HSBC(2017), Payment Services Directive II(PSD2).
- Huntswood(2019), The changing value chain: open banking and the future of card payments.
- Mobey Forum(2017), European digital wallet landscape.
- Foerster, H.(2017), PSD2 and Europe's open banking mandate: challenges for banks and

fintechs, NCR.

Oliver Wyman(2016), Wake up to bank-to-bank payments. Temenos(2019), Payment Services Directive 2(PSD2). Worldpay(2018), Global Payments Report.

A Review on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Payment Market and Its Impact of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Focusing the Emergence of the Digital Payment Methods

#### Tae-Jun Park\*

Senior Research Fellow,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Jong Mun Yoon\*\*

Research Fellow,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emergence of non-financial digital payment service providers such as BigTech and FinTech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current Korean credit card industry and the payment market, and the impact of such changes in the payment market on the futur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By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and observing the actual phenomenon occurring around the Korean credit card industry, we fin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digital payment methods is defined in Korea as a service that innovatively improves their convenience in the way of delivering they by utilizing the existing payment instruments such as credit cards, account transfers, etc. and the payment system. Second, non-financial digital payment service providers are leading the Korean payment market by playing a key role in the value chain of digital payment services, for example, PG services equipped with credit and debit cards issued by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This is a threat to credit card companies' payment functions,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partnerships with these providers. Third, for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partnerships with these providers are not a very concern in the short term due to the increased card use, in the long term, however, their dominance in the Korean payment market may be weakened as the influence of such providers are likely to expand. Fourth,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new financial business in Korea based on open banking such as AISP, PISP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credit card company's business sectors such as card issuance and payment, loans, data sales and analysis in the future.

Keywords: Digital payment methods, Payment market, Korean credit card industry, AISP, PISP

<최초 투고일: 2020년 9월 16일>, <수정일: 2020년 12월 22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2월 26일>

Address: 43 Dadong-gil, Jung-gu, Seoul, 04521, Korea, E-mail: tjpark@crefia.or.kr, Tel: +82-2-2011-0750

<sup>\*\*</sup> Address: 43 Dadong-gil, Jung-gu, Seoul, 04521, Korea, E-mail: idisyun@crefia.or.kr, Tel: +82-2-2011-0719